

서울대학교 통합인증 서비스지침

제정 2007. 2. 5
개정 2013. 7. 16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서울대학교 내에서 운영되는 정보서비스에 필요한 사용자 인증 및 권한관리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정보화본부에서 제공하는 통합인증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비스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내 기관에서 교육·행정·연구 목적으로 구현한 정보서비스를 통합인증 서비스의 사용 대상으로 정한다.

1. 교육기구(학부/과 단위 이하는 제외)
2. 행정기구
3. 지원시설
4. 대학본부 직할 부속시설
5. 기타 기관은 정보화본부장과 별도 협의한다.

제3조(서비스시간 및 장애대응) 통합인증 서비스는 연중 365일 중단없이 제공하되, 예상치 못한 장애 발생시 복구는 정상 근무시간(월~금, 09:00 ~ 18:00)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사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 하는 정보서비스는 통합인증 서비스의 사용이 제한된다.

1. '서울대학교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의 준수
2. 데이터 책임 관리가 가능한 운영 주체의 존재
3. 서울대학교 고유 IP 주소와 도메인 사용

제5조(인증정보 제공) 통합인증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인증정보는 별표 1과 같다. 단, 인증정보는 '서울대학교 행정정보화 서비스지침'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협의 과정을 거친 경우에 한해 제공된다.

제6조(서비스 신청) 통합인증 서비스의 사용을 원하는 학내 각 기관은 정보화본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신청한다. 단, 해당 정보서비스 구축시 정보화본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인증서비스요청서
2. 보안서약서
3. 개인정보 보유부서의 사용 승인 전자문서

제7조(개발 환경) 통합인증 서비스에서 지원하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WAS) 및 웹서버는 별표 2와 같으며, 서비스 연동을 위한 인터페이스는 정보화본부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8조(도용) 특정 정보서비스가 정보화본부장의 승인 없이 통합인증 서비스를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학내 기관에 위치한 정보서비스인 경우, 통합인증 서비스 사용을 차단하고 해당 서비스의 관리자에게 통보한다.
2. 학외에 위치한 정보서비스인 경우, 학내 네트워크 접근을 차단하고 해당 서비스의 관리자에게 통보한다.

제9조(이용 기관의 의무)

- ① 통합인증 서비스를 사용하는 학내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통합인증 서비스를 사용하는 정보서비스의 관리자는 ‘서울대학교 보안업무 처리 규정’ 제11조에 의해 인가된 자에 한해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통제해야 한다.
 2. 2005년 2월 이전에 구축되었거나 자체 DB를 사용하는 정보서비스의 경우, 독자적으로 확보한 사용자 인증정보에 대한 보안을 확립해야 한다.
 3. 통합인증 서비스를 사용하는 정보서비스의 초기 화면에는 서울대학교 포털(my.snu.ac.kr) 및 대표 홈페이지(www.snu.ac.kr)에 대한 연계(link)를 명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 ② 제1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정보화본부장은 통합인증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제10조(에이전트 설치 및 라이선스 구매)

- ① 통합인증 서비스를 사용하는 정보서비스에는 서비스 연동 지원을 위한 별도의 에이전트가 설치되어야 한다.
- ② 에이전트 설치를 위해서는 라이선스 구매가 필요하며, 해당 구매비용은 실비 정산 기준으로 통합인증서비스 이용기관에서 자체 부담하도록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유예) 제10조는 차세대통합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시점부터 시행한다.